
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양성평등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성평등위원회 심의·의결
사항에 위원회 성별구성기준 미준수 사유를 심의할 수 있
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.

또한,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집합 회의가
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성평등위원회, 성평등기금

운용심의회,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을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했으며,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6조제2항제8호에 성평등위원회 기능에 자치구 각 위원회의 성별구성기준 미준수 사유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제3항, 제50조제3항에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또한, 안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,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